

광주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5465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와 D(E생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2023. 7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3. 8. 21. 접수 제11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혜선

별지